

연구논문

UCC상 Warranty 違反의 救濟에 관한 研究

서 정 일 *

〈 목 차 〉

- I. 擔保責任의 形態
- II. 擔保責任違反에 대한 損害
- III. 擔保責任違反에 대한 救濟
- IV. 擔保責任의 制限
- V. 結論

* 법학박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위원

I. 擔保責任의 形態

영미법상의 담보책임(warranty)이라 함은, 매수인이 인도받은 계약물품에 대해 매도인이 계약 시 제시한 물품의 품질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약속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매도인이 부담하는 계약위반책임의 하나이다. 영미법상 담보책임에 관한 법리가 영미계약법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매우 큰 것이어서 이 문제는 계약법 전 분야의 중요문제에 관련되어 있고 그 사용범위도 광범위하다.¹⁾

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판매된 물품에 대해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위반하는 흠을 몰랐거나 혹은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어도 알 수 없었다는 것은 담보책임의 적절한 항변사유가 되지 못한다.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엄격책임이다.

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담보책임은, 소유권과 위법이 없다는 것에 대한 담보책임(warranty of title and against infringement), 상품성에 대한 묵시적 담보책임(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 물품이 특별한 용도에 적합하다는 묵시적 담보책임(implied warranty of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및 매도인의 표시에 의한 담보책임(express warranty)을 들 수 있다.

미국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에서는 명시적 담보의 성립을 규정한다(UCC 2-313).²⁾ UCC 2-314에서는 묵시적 담보³⁾의 성립

1) 李泰熙, "美國統一商法典上的 擔保責任," 「辯護士」第15輯(1985), 358-359面.

2) 賣渡人이 見本, 廣告 등에 의해 物品에 관한 說明을 하였으나 그 후 실제로 인도된 物品이 그에 一致하지 않는 경우에 明示的 擔保責任을 인정한다. John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Deventer :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1982), p.252.

UCC 2-313. Express Warranties by Affirmation, Promise, Description, Sample

(1) Express warranties by the seller are created as follows:

① Any affirmation of fact or promise made by the seller to the buyer which relates to the goods and becomes part of the basis of the bargain

요건 중 권리담보의 성립을, UCC 2-312에서는 특정목적적합성의 담보성립을 규정하고 있다.

매도인에 의한 명시적 담보책임(express warranty)은 다음과 같이 창설된다.

(1)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사실의 확신 또는 약속으로서 물품과 관련을 가지고 있고, 또한 거래의 기초의 일부가 되어 있는 것은 그 물품이 확신 또는 약속에 합치할 것이라는 취지의 명시적 담보책임을 창설한다.⁴⁾

(2) 거래의 기초의 일부가 되어 있는 물품의 종류표시(description)는 그 물품이 그 종류표시에 합치할 것이라는 취지의 담보책임을 창설한다.

(3) 거래의 기초의 일부가 되어 있는 견본 또는 모델은 물품의 전체가 그 견본 또는 모델과 합치할 것이라는 취지의 담보책임을 창설한다.

UCC 2-314, 2-315는 묵시적인 담보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묵시적 담보책임이라 함은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배제하

creates an express warranty that the goods shall conform to the affirmation or promise.

⑥ Any description of the goods which is made part of the basis of the bargain creates an express warranty that the goods shall conform to the description.

⑦ Any sample or model which is made part of the basis of the bargain creates an express warranty that the whole of the goods shall conform to the sample or model.

(2) It is not necessary to the creation of an express warranty that the seller use formal words such as "warrant" or "guarantee" or that he have a specific intention to make a warranty, but an affirmation merely of the value of the goods or a statement purporting to be merely the seller's opinion or commendation of the goods does not create a warranty.

3) 默示的 擔保責任은 明示的인 製品說明이 없는 경우에도 인도된 物品이 일정한 品質基準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發生하는 責任이다.

4) 매도인이 'warrant' 또는 'guarantee' 등의 형식적 자구를 사용하거나 또는 담보할 특정의 의사를 가졌다는 것은 명시적 담보책임의 창설에 필요한 것은 아니나 물품의 가치에 대한 확신 또는 물품에 대한 매도인의 의견 또는 천거에 불과한 것과 같은 표시는 담보책임을 창설하지 아니한다.

거나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인정되는 담보책임을 말한다. 묵시적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타의 묵시의 담보책임을 당사자간에 있어서의 거래의 정도 또는 거래관행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묵시적 담보책임은, 매도인이 그 물품과 동류의 물품을 취급하는 상인인 경우 매도되는 물품은 매도인이 취급하는 다른 물품과 마찬가지로 상품성이 있어야 한다. 상품성을 가진 물품이라 함은, 계약된 종류표시에 의하여 거래상 이익 없이 통용하는 것일 것, 대체성을 가진 물품의 경우에는 종류표시의 범위 내에서 공평한 평균품질을 가질 것, 물품이 사용되는 통상사용목적에 적합한 것일 것을 요한다.

불특정물의 매매의 경우에, 우리나라나 영미법상은 중등품질 또는 공평한 평균품질(fair average quality)을 가진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매도인의 신의성실의무가 이행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UCC 2-314).

매도인이 매수인의 특정한 사용목적에 일고 있는 경우, 매도되는 물품은 매수인의 특정사용목적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영미법상에서는 매수인이 어떤 특정목적에 위하여 물품을 매입하고자 할 때, 매도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매수인이 그 특정목적에 적합한 물품의 공급을 받는데 대해 매도인의 판단력이나 숙련도에 신뢰를 두고서 그 물품을 매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물품이 특정사용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하는 묵시적 담보책임을 발생하게 된다.

UCC에서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매매계약의 모든 조항을 자유로 결정할 것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조건이 불법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전제로 인정하고 있다. 당사자간에 별단의 합의가 없으면 명시 또는 묵시의 담보책임을 배제하거나 변경할 것을 인정하고 있다. UCC에서는 매도인의 Warranty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대체로 인도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대품을 매입(cover)하거나, 또는 손해배상(damages)을 회복하거나, 계약을 취소하거나 하는 권리행사의 선택이 가능하게 규정되어 있다.⁵⁾

5) UCC 2-601, 2-711, 2-714.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 통일상법전상의 Warranty 위반의 형태를 규정한 내용과 엄격책임의 법리에 따른 사건에 대한 판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연구 분석을 통해, 담보책임위반의 손해배상범위의 결정과 구제방법을 실증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擔保責任違反에 대한 損害

1. 損害價格의 算定方法

물품에 하자가 없었더라면 보유했을 가치는 보통 매매대금이 그 기준이 되므로 별문제가 없지만, 수령된 물품의 가치는 어떤 특정의 매수인에 있어서와 일반적인 다른 매수인들에 있어서는 다를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매도인이 계약과 다른 치수의 강철을 인도한 경우 그 강철의 시장거래가격은 약정된 강철보다 10% 정도 쌀 뿐이나, 그 치수의 차이 때문에 어떤 매수인에게는 그것이 전혀 쓸모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매수인에게는 그것이 매수목적의 거의 충족시켜 줄 수도 있다. 매수인에 있어서 그 강철의 가치(주관적 가치)가 일반적인 매수인에 있어서의 가치(객관적 가치)와 상이할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그 공식(formula)에 맞추어 가며 매수인의 개인적 용도를 참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Peters 교수는 수령된 물품의 가격은 그것이 매수인에게 개인적인 기준으로 시가(market value)보다 효용이 적을 경우 그 개인적 기준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이에 대응되는 가격 즉 보장된 물품의 가격도 주관적으로 산정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보장된 물품의 가격은 공식의 적용에 계약가격이 그 측면의 강력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별다른 분쟁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수령된 물품의 가격에 있어서는 그 자료가 불분명하다.

UCC 1-106에서는 피해당사자는 그 상대방이 완전히 이행한 것과 동일

한 상태를 이루는데 필요한 범위의 손해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객관적인 산정방법이 매수인에게 과잉배상을 초래하는 경우에 법원은 주관적인 산정방법을 원용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⁶⁾ 매수인이 하자있는 물품의 가치를 시가보다 주관적으로 고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수령가격의 객관적인 산정은 매수인에게 과잉배상을 받게 만들고, 반대로 매수인의 주관적 물품가치가 시가보다 저가인 경우에는 객관적 기준에 의한 산정은 매수인에게 부족한 배상을 받게 만든다.⁷⁾

UCC 2-714(2) 후문의 규정에 의해서는 해석상 포괄적으로 전문의 산출 방식에 의한 손해액과 다른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⁸⁾ 이 경우 매수인의 특별한 용도 등이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시가를 확정하는데 객관적 기준⁹⁾을 사용하였고, 특별한 사정을 고려한 사안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언급한 것은 전혀 없다. 특별한 사정을 확대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취한다 하더라도 매수인의 손해액에 대한 적절한 산정을 설명하는 데에는 곤란한 점이 있다.¹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트럭 한 대를 매수했는데, 그것이 뉴욕주의 주세(2,000달러)로 유치권(lien)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매수인은 캘리포니아주에서만 운행할 것이어서 뉴욕주에서만 효력이 있는 유치권으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을 수 있다. 매도인은 이러한 특별사정은 2,000달러의 조세유치권을 무관하게 만들고 따라서 매수인은 유치권 설정으로 아무런 손해도 입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매수인이 트럭을 전매할 경우에 그 가격은 유치권 때문에 감소될 것이라는 사실을

6) UCC 1-106조에서는 “損害를 입은 當事者は 단지 相對方 當事者が 契約을 完全히 履行하였더라면 자신에게 있었을 상태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損害賠償만을 請求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7) 高炯奎 外 2人, 前掲論文, 166面.

8) 法院은 UCC 2-714條의 特別한 事情을 원용하여 權利瑕疵擔保責任事件에서 UCC 2-312條의 擔保價格의 算出時期를 변경한 예도 있다; *Ricklefs v. Clemens*, 216 Kan. 128, 581 P.2d 94, 16 UCC 322(1975), *Schneidt v. Absey Motors, Inc.* 248 N.W. 2d 792, 21 UCC 536(N.D.1976).

9) Franklin R. Root,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Sixth Ed., (South-Western Publishing Co., 1990), p.5.

10) 高炯奎 外2人, 前掲論文, 166~167面.

주목해야 한다. 그 점에서 매수인은 유치권의 존재에 대하여 상당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UCC 2-714(2)는 수령된 물품이 Warranty¹¹⁾를 위반한 경우에 있어서 성 문법 이전 때부터 적용되던 법리와 그 손해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안에서 법원은 매수인이 인도받은 물품을 제대로 회복하는데 소요되었거나 소요할 수리비를 활용함으로써 용이하게 손해의 산정을 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 법원은 가격산정에 있어서 곤란하지만 다른 유사기준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 때에 법원은 매수인의 특별한 용도(need)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 Warranty 違反으로 인한 損害

UCC 2-712(2)(대품매입, cover)¹²⁾, UCC 2-713(인도거절과 이행거절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그리고 UCC 2-714(3)이 모두 매수인에 대하여 부수적(incidental) 손해배상과 결과적(consequential) 손해배상의 청구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논의는 매도인의 어떠한 형태의 위반(breach)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이다.

UCC 2-715(1)은, '매도인의 위반으로 인한 부수적 손해는 적법하게 수령 거절된 물품에 대한 검사, 수령, 운송, 관리, 보존에 필요한 상당한 비용과 대품매입(cover)에 관련된 상거래 통상의 부과금, 비용, 수수료와 물품의 지체 기타 위반으로부터 생기는 통상적 비용을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부수적 손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UCC 2-715(1)은 부수적 손해에 포함되는 것들을 열거하고 있을 뿐이다. UCC 2-715(1)에 대한 주석(comment)은 조항에 열거된 것들이 그 전부가

11) 영미법상의 Warranty는 그 법률적 성질로 볼 때 우리 민법 제570조 내지 제584조에서 말하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해당하는 개념의 용어이다.

12) 賣渡人이 賣買契約을 違反함으로써 賣渡人이 제공하는 物品으로서는 契約의 目的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買受人은 성실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賣渡人이 인도를 懈怠한 物品에 대신할 物品을 취득하기 위한 契約을 締結할 수 있으며 이러한 法的保障을 代品買入이라 한다.

아니고, 이는 2-715조에 의하여 배상받을 수 있는 부수적 손해, 즉 적법한 수령거절과 관련된 비용(검사, 보관 등), 수령의 적당한 철회와 관련된 비용, 대품매입(cover)에 관련된 비용 등 부수적 비용의 전형적 유형을 단순히 예시한데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법원은 매수인의 비용이 매도인의 위반에서 파생되고 통상적으로 발생된 것인 경우에는 UCC 2-715(1)에 의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데 인색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Grandi. v. Lesage*¹³⁾에서 매수인은 경기용 말을 종마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수하였는데 실제로 그 말은 거세된 말이었다.

매수인은 UCC 2-608에 의하여 그 수령을 철회하고 그 매입가격과 함께 부수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¹⁴⁾ 이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손해액 가운데에는 그 말을 3개월 동안 관리 사육하고 유지하는데 소요된 1일 1.5달러씩의 부수적 손해가 포함되었다.¹⁵⁾

Oregon 주법원(州法院)도 *Lanners v. Whitney*¹⁶⁾사건에서 유사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였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내공성이 있다고 장담한 비행기를 믿고 매수하였다가 그렇지 못하여 그 수령을 철회한 사건이다. 법원은 매수인의 비행기 반환을 인정하고 그 관리 보관에서 발생한 것 등 매도인의 위반으로 인한 결과로서 통상적으로 초래된 비용을 인정하였다. 그 손해액 중에는 그 비행기의 시카고까지 비행중에 수리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과 시카고까지 비행한 이후에 그 비행기를 보존하는데 소요된 비용, 즉 라디오 배터리 대체비, 보관료와 지상보험료 등이 포함되었다.¹⁷⁾

Warranty 위반으로서 부수적 손해를 인정한 예는 *Lewis v. Movil Oil Corp*¹⁸⁾사건이다. 그 사안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의 수압 제재소 장치에 적합하지 않은 기름을 제공하였다. 그 기름 때문에 제재기가 2년 6월 동안이

13) 74 N.M. 799, 399 P.2d 285, 2 UCC 455(1965).

14) 法院은 UCC 2-711條가 契約破棄에 損害賠償을 인정하는 이상 惡意와 故意가 수반된 契約違反에서 그 曠政적인 損害賠償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15) 399 P.2d 288, 2 UCC 457~458.

16) 428 P. 2d 398, 4 UCC 369(1967).

17) 428 P. 2d 404, 4 UCC 379.

18) 438 F.2d 500, 8 UCC 625(8th Cir.,1971).

나 비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 법원은 매도인이 특수한 목적에 적합하기 위한 Warranty를 위반¹⁹⁾ 하였다 하여 매수인에게 부수적 손해로서 기름을 더 소비한 만큼의 초과 비용과 기름이 보장된 대로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손상된 기계부품의 수리비와 대체비를 인정하였다.²⁰⁾ 매수인 중에는 위 조항이 인정하는 부수적 손해를 매도인의 위반과 관계가 먼(remotely connected) 비용의 손해배상청구까지도 허용하는 것으로 주장할지 모른다. 예를 들면, 매수인이 대체물을 매수하였으나 그것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행하여진 것이 아니어서 이른바 대품매입(cover)에 해당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UCC 2-712(1) 규정은 대품매입에 부당한 지체 없이 행하여 질 것을 요구한다). 만약 UCC 2-713에 의한 시가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그 대품을 찾는 데 소요된 비용까지도 그것이 물품의 지체나 기타 위반에서 연유된 비용이라 하여 함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문제된다.

UCC 2-715에 대한 comment는, 그러한 손해는 물품의 불일치 또는 인도 불이행의 위반이 있을 때 그 물품의 적절한 수령거절, 수령취득 또는 대품매입과 관련되어 발생된 것이 아니므로 여기서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더욱이 그 대품매입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 매입가격 자체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추정될 수는 없다.²¹⁾ 위반과 손해 사이의 우연한 관련만으로 그 손해가 위반에 부수되는 관계라고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또한 여러 사건에서 그 관련의 한계를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19) 438 F 2d. 507, 8 UCC 636.

20) 438 F 2d. 508, 8 UCC 636-637.

21) 附隨的 損害賠償을 制限할 수 있는 다른 한 방법은 代品買入이 아닌 代替物의 買入에 관련된 損害는 通常的인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Ⅲ. 擔保責任違反에 대한 救濟

UCC는 담보책임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율하기 위해, 2-714(1)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의 계약위반으로부터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합리적인(reasonable) 방법으로 결정되는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일반적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²²⁾ UCC 2-714(2)에서는, 기본적 손해산출에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는 손해액산정의 시기에 관하여 매수인은 물품의 수령시를 표준으로 수령한 물품의 실제가격과 그 물품이 보장(warrant)된 대로라면 가질 가격과의 차액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²³⁾

매수인이 UCC 2-714에 의하여서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UCC 2-713 또는 UCC 2-712에 의하여서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중요한 종목에 한하여 주목해야 한다.²⁴⁾

UCC 2-714는 매수인에게 염가매수(Good bargain)의 이익을 허용한다.

UCC 2-714(2) 소정의 형식(formula)에 의하면, 매수인은 수령된 물품의 가격과 그것이 보장된 대로라면 가질 가격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매수인은 그가 체결한 염가매수의 이익을 취하게 된다.

UCC 2-714(2)에 규정된 공식의 정의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문제되는 법률적 의문점은 어떠한 기준으로 수령된 물품의 가격과 그 물품이 보장된 대로라면 가질 가격들을 산정할 것인가,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어느 범

22) 瑕疵擔保責任 또는 契約違反의 損害는 賣渡人이 그 代金を 請求한 訴訟에서 防禦方法으로 主張될 수 있다 : Pendarvis v. General Motors Corp., 6 UCC 457,459(N.Y. Sup., Ct. 1969)에서 法院은 買受人이 契約 違反을 立證하면, 自動車 殘代金の 全部 또는 一部の 支給債務에 대하여 債務不存在의 確認判決을 받을 수 있다고 判定하였다.

23) Cambern V. Hubbling, 307 Minn. 168, 238 N.W.2d 622, 18 UCC 653(1976). 어떤 결합있는 동물의 치료결과와 치료비로써 매수인의 손해를 산정한 예.

24) Wat Henry Pontiac 事件에서 중고차 매도인은 이 차는 "A-1형으로 기계적으로 완전하다"고 했는데 그 후 차가 고장 났을 경우에 法院은 明示的 擔保責任을 인정하였다.

위까지가 주관적인가(일반적인 시장가격과 달리 매수인의 특별한 목적에 의하여 결정되는 가격), 달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special circumstances)이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UCC 2-714(2)의 공식(formula)(수령된 물품의 실제가격과 보장된 대로의 물품의 가격과의 차액)은 근본적으로 성분법전의 공식과 동일한 것이다.²⁵⁾ 따라서 실제가격과 보장된 가격과의 차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으로 유용한 자료는 그 수리비 또는 대체비를 말한다.²⁶⁾

만약 매수인이 하자있는 라디에타(Radiator)가 부착된 트럭을 수령하였다면 그 인도된 트럭과 보장된 트럭과의 가격차를 산정하는 적절한 방법은 그 하자있는 트럭의 가격이 아니라 새로운 라디에타의 가격이다.²⁷⁾ 수리나 대체의 수단만으로는 그 물품이 원래 보장된 것으로서 회복시킬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수리된 물품과 원래 보장된 물품과의 차액에 대하여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²⁸⁾ 이와 같은 차액의 산정방법으로서 수리비나 대체비가 유용하기는 하나, 기술적으로는 그 적용에 한계가 있다. 즉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발생한 수리비와 대체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문제이다.²⁹⁾

25) Klein v. Asgrow Seed Co., 246 Cal.App. 2d 87,54 Cal.Rptr.,609(1966).

26) General Supply & Equipment Co. v. Philips, 490 S.W. 2d 913, 12 UCC 35(Tex Civ.App.1972).; Chrysler Corp. v. Wilson Plumbing Co.Inc. 132 Ga. App.435, 208 S.E. 2d 321, 15 UCC 78(1974).

27) Cox Motor Car, Co. v. Castle, 402 S.W. 2d 429, 3 UCC 397(Ky. App. Ct. 1966).

買受한 트럭이 계속해서 덜컹거리고 賣渡人이 이에 대하여 아무 조치도 없는 경우에, 法院은 契約上의 救濟 方法의 制限規定을 넓게 해석하여 트럭 전체를 대체하는 損害賠償請求를 許容하였다.

28) Soo Line R. V. Fruehauf Corp., 547 F.2d 1365, 20 UCC 1181(8th Cir. 1977).

수리를 하여도 그 차량이 제대로 製造되었더라면 가질 수 있는 상태로 까지 回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價格差異나 減少의 算定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수리비 이외에 보장된 物品의 市場公正價格과 수리된 物品의 市場公正價格과의 差額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判示하였다.

29) 賣買契約에서 修理費와 代替費請求를 買受人의 유일한 救濟方法으로 制限하는 경우가 있다. 賣渡人이 그 義務대로 履行한다면 그 契約은 買受人에게 保障價格의 物品을 擔保한다.

만약 매수한 차량의 엔진이 일년 동안 정상적인 기능이었는데 그 후 결함이 나타난 경우에 매수인이 그 엔진의 수리비를 수령한다면 그 차량은 원래 보장된 대로의 차량보다도 더 수명이 길어지게 될 것이므로 매수인이 그만큼 이익을 얻게 되는 결과가 된다.

어느 연방지방법원 사건에서, 텔레비전탑의 매수인이 눈보라로 쓰러진 그 탑의 대체비를 청구하였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나타났다. 연방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충분히 배상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에게 초과이익(windfall)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보고³⁰⁾, 그 대체비로부터 그 결함이 나타나기 전까지 매수인이 그 물품을 사용함에 대한 합리적인 감가비용(Depreciation)을 공제하였다.³¹⁾

매도인은, 수리나 대체로서 그 물품이 원래 보장된 가격으로 회복되거나 그 비용이 수리된 물품의 가격과 보장된 가격과의 차액을 초과하게 되는 상황을 경계하여야 한다. 일정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³²⁾ 또한 수리를 했으나 물품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 그 비용은 차액의 산정자료가 될 수 없으며 이것은 결과적 손해(consequential damages)로서 배상되어야 한다.³³⁾

수리비나 대체비가 손해액의 산정에 합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매수인 자신이 스스로 수리를 했거나, 장래의 수리비 추산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입증 상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³⁴⁾ 그리고 물품의 성질

30) Community Television Services Inc. v. Dresser Industries, Inc., 435 F. Supp., 214, 216, 22 UCC 686, 688 (1977).

31) General Supply & Equipment Co., v. Philips, 490 S.W. 2d 913, 12 UCC 35 (Tex. Civ. App., 1972). 買受人은 온실의 판자를 2년동안 사용하였는데도 그 낡은 판자의 보수보다 덜드는 費用인 代替費用의 金額 을 賠償받은 事例.

32) Foremost Mobile Homes Mfg. Corp., v. Steele, 506 S.W. 2d 646, 14 UCC 657 (Tex. Civ. App., 1974).

33) Curtis v. Murphy Elevator Co., 407 F.Supp. 940, 19 UCC 145 (E.D. Tenn., 1976).

買受人은 結果的 損害의 適用을 받지 않으면서도 결함있는 Elevator의 修理에 필요한 費用과 修理에 실패했으나 그 소요된 費用을 인정 받은 事例.

34) Sellinger v. Freeway Mobile Home Sales, Inc., 110 Ariz. 573, 521 P.2d 1119,

상 수리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그 수리비나 대체비가 매수인의 손해를 산정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법원은 다른 상당한 방법으로 수령된 물품의 가격과 보장된 물품의 가격과의 차액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UCC 2-714(2)).

물품수령시의 시장공정가격은 보장된 대로의 물품의 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가격인용이 유용하다. 시장의 공정가격이 용이하게 확정될 수 없거나 또는 당사자들이 그것을 가격산정방법으로 원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매입가격이 보장된 물품의 가격에 대한 강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³⁵⁾

수리나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 하자있는 수령물품의 가격을 확정하는 것이 보장된 물품의 가격을 확정하는 것보다도 훨씬 어려울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떤 법원에서는 그 물품을 즉시 전매하여 받은 대금 액수를 그 산정자료로 원용하였고 어떤 법원에서는 전문가의 감정증언을 그 물품수령시의 시가의 증거자료로 받아들이기도 하였다.³⁶⁾ 대부분의 사안에서 법원은 수령된 물품의 가격과 보장된 물품의 가격과의 차액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수리비나 대체비를 참조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시가에 관하여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증거 자료를 찾아내야 한다.³⁷⁾

상당한 경우에 있어서 UCC 2-715(2)에 의하여 배상받을 수 있는 결과적 손해는, UCC 2-714(2)에 의하여 배상받을 수 있는 가치차액에 의한 일반적 손해(general difference-in-value damages)와 중복되는 수가 있다. 법원은 가끔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 전체손해액을 이루는 일반적 손해부분과 결과적 손해부분과를 구별 확인함이 없이 전체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하곤 한다.³⁸⁾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그 전체의 손해와 이를 구성하는 어떤

14 UCC 958(1974). 이동가옥의 결함에 대한 US\$690의 損害賠償의 認定은 그 修理費가 US\$2,000이나 소요된다는 감정증인의 증언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다고 判示한 事例.

35) R & L Produce, Inc., v. Mims Produce, Inc.(1978).

36) Soo. Line Railroad Co. v. Freuhauf Corp.(1977).

37) UCC 2-719의 制限에 따라 雙方當事者는 損害賠償算定의 方法을 變更할 수 있다.

부분적 손해를 중복하여 배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에서만 정당시될 수 있다.

R. Clinton Construction Co. v. Bryant & Reaves, Inc.³⁹⁾ 사건에서 법원은 손해의 요인들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 결과 매수인에게 이중의 배상을 명한 꼴이 되었다. 이 사건에서 매수인은 겨울철에 엔진이 얼어 장비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그 부동산에 하자가 있음이 판명되었다. 법원은 매수인이 입은 손해로서 '손상된 기계를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기계부품 및 수리공에게 지급할 노임 상당의 금액과 그 수리에 필요한 기간동안 매수인이 얻을 수 있었던 수입 상당의 일실이익'을 배상하도록 명하였다.⁴⁰⁾ 이 배상결정은 만약 위 부동산이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였더라면 매수인이 향유할 수 있었던 이익, 즉 이행이익을 인정한 것이지만, 법원은 또한 UCC 2-714(2)을 인용하여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는 이유로 그 부동산의 매수가격 까지 배상하도록 허용하였던 것이다.⁴¹⁾

그러나 만약 그 부동산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여 사용되었더라면 매수인은 장비에 어떤 손상을 입지 않았을 터이지만 한편 그 부동산도 이미 사용되어 소비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 부동산의 매수가격까지도 배상을 명한 것은 매수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를 넘어서 더 많은 배상을 하여준 결과가 되었다.⁴²⁾

비록 법원이 그 매수가격의 성질을 UCC 2-714(2)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가치차액 상당의 손해(difference-in-value damage)로 보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 매수가격은 수리비용과 일실이익이라는 다른 두 가지 손해의 요인에 포함되는 손해의 한 요인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중배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에도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38) *Baden v. Curtiss Breeding Service*, 380 F.Supp., 243, 15 UCC 400 (D.Mont.,1974); *Russo v. Hiltop Lincoln-Mercury, Inc.*, 479 S.W.2d 211, 10 UCC 768(Mo.App.1972).

39) 422 F. Supp. 838, 23 UCC 310(N.D.Miss. (1977).

40) 422 F. Supp. 846, 23 UCC 320.

41) 442 F. Supp. 846, 23 UCC 319.

42) *Swenson v. Chevron Chem.Co.*, 89 S.D.497, 234 N.W.2d 38, 18 UCC 67(1975).

결과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제외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법원은 항상 결과적 손해와 가치차액의 손해를 구별하는데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Russo v. Hilltop Lincoln-Mercury, Inc.⁴³⁾ 사건은 배선의 하자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여 매수인이 매입한 새 자동차를 전소시킨 사건인데, 법원은 결과적 손해에 대한 배상에 상응하는 자동차 값의 비율을 확인함이 없이 매도인에 대하여 자동차 매수가격 전액을 배상하도록 명하였다.⁴⁴⁾ 그러나 이 경우 오직 그 자동차의 수령 당시의 보장된 가치(warranted value)와 실제의 가치(actual value)와의 차액만이 UCC 2-714(2)에 의하여 일반적 손해로서 배상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다. 그 하자 있는 배선 때문에 수령 당시의 자동차의 실재가치는 매수금액 이하로 떨어진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하자 때문에 수령당시의 자동차 자체가 전혀 쓸모없이 된 것은 아니었으므로 화재로 인한 손해의 대부분은 결과적인 것이었다. 만약 쌍방이 계약에 의하여 결과적 손해에 대한 배상문제를 제외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법원은 마땅히 매수인이 입은 전체의 손해를 구성하는 가치와 다른 요인을 구별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위반 당사자가 계약체결 시에 예견하였거나 예견하여야 할 손실이라는 예견가능성원칙은 Hadley v. Baxendale⁴⁵⁾ 판례에서 개발된 foreseeability 또는 improbability 라는 개념으로서 보편화된 것을 국제물품매매통일법에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⁴⁶⁾

Hadley v. Baxendale 판결의 개요를 살펴보면, 이 사건의 원고는 제분공장 주인이었는데 그 제분기의 회전축이 파괴되어 공장이 가동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새 제분기를 제작하기 위한 원형으로 그 파괴된 회전축을 제조원인 기계공장에 송부하기로 하고, 그 운송을 운송업자인 피고에게 의뢰하였다. 이 때에 원고는 피고에게 운송물품은 제분기의 파괴된 회전축이라는 것 및 원고가 제분공장 주인이라는 것만을 알려 주었을 뿐이었다. 피고의 태만에 의하여 운송이 수일 지체되고 완성된 새 회전축의 입수도 지체

43) 479 S.W.2d 211, 10 UCC 768(Mo.App.1972).

44) Curtis v. Murphy Elevator Co., 407 F. Supp. 940, 19 UCC 145(E.D.Tenn.1976).

45) Hadley v. Baxendale, 1854, 9 Eng.Rep. 341~354.

46) 徐希源, 英美法講義(서울:博英社,1994), 349面.

되었던 결과, 원고는 다른 대체 회전축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부득이 지체일수 만큼 더 휴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은 지체된 수일 동안 휴업을 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이득의 상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의 여부였다. 법원은 그 손해는 원격하므로 그것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 판결이유로서 먼저 계약위반의 경우에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그와 같은 계약위반으로부터 자연적으로, 즉 사물의 통상의 과정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생각될 수 있는 손해, 또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 양당사자가 그 위반의 개연적 결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측될 수 있는 손해”라고 하였다.⁴⁷⁾ 따라서, 특별한 사정 하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특별한 사정을 원고가 피고에게 알려줌으로써 양당사자가 그것을 알고 있었을 때에는 그 특별한 사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배상의 대상이 되지만, 그 사정을 피고가 전혀 알지 못한 때에는 그 특별한 사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는 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⁴⁸⁾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주문받은 물품을 제조하기 전에,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 통지한 경우, 매도인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에는 계약의 존재로부터 발생하는 이익뿐만 아니라 계약의 이행에 관한 경비로서 본래 산입되어야 할 관리 기타 일반적인 사무경비, 공장, 기계설비 따위의 감가상각비 등도 통상 포함된다.

쌍방이 맺은 계약을 어느 일방이 위반한 경우, 다른 일방이 그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배상받아야 할 손해는 그 계약위반 자체로부터 자연적으로 생긴, 즉 통상과정에 따라 생긴 것이라고 하는, 정당하고도 합리적으로 생각되는 손해이거나, 또는 계약 당시에 당사자 쌍방이 그 계약위반의 결과로서 예상하고 있었다고 합리적으로 보여 지는 그러한 손해이어야 한다. 만일 특별한 사정이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통지되어서 쌍방이 모두 이러한

47) 前掲書, 349面.

48) 上掲書, 349面.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그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쌍방이 합리적으로 예상하였던 손해는 그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위반의 결과 통상적으로 생기는 손해액이 된다. 그러나 그 특별한 사정이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 일방에게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다면 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어떤 특별한 사정 하에서 계약이 맺어진 경우가 아닌 대다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계약위반으로부터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범위만을 예상할 수 있다.⁴⁹⁾

Hadley v. Baxendale 판결이 가져온 즉각적인 결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위 법칙은 배심원들이 계약위반에 대하여 허용할 수 있는 배상의 범위에 하나의 제한을 둠으로써 거래에 있어서의 위험부담을 어느 정도 경감시켰으며, 둘째, 동시에 계약위반의 상대방 당사자가 그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은 특수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다만 그 판결문의 문구가 너무 모호하였기 때문에 영국 및 미국의 법원들은 1세기 이상 동안이나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지고 논쟁을 하여왔다. 즉,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에게 특별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그 위반자가 도대체 특별사정에 관하여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⁵⁰⁾

이 문제의 해결방법으로 법원은 두 가지 접근방법(approach)을 취하였다. 그 하나는 보다 제한적인 방법으로서 이른바 묵시적 합의의 원칙(tacit-agreement test)인데, 이는 오직 '계약당시 피고가 이러한 책임을 명시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보여 지거나 또는 이를 부담한 것으로 보여 질 정도로 원고에게 어떤 보장을 하였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만' 특별한 사정으로부터 생기는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이 원칙을 적용하면 계약 당사자 쌍방이 결과적 손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또 피고가 실제로 이러한 손해의 위험을 부담하기로 했다는 사실

49) 156 Eng. Rep. 145(1854).

50) Globe Ref. Co. v. Landa Cotton Oil Co., 190 U.S. 540,545(1903).被告의 責任範圍는, 그 條件이 被告에게 提示되었더라면 被告가 이에 同意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條件下에서 解決되어야만 한다고 한다.

을 모두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⁵¹⁾ 다른 또 하나의 접근방법은 확실의 최근 경향이 묵시적 합의의 원칙을 배척하는 입장이다.

IV. 擔保責任의 制限

특별한 손해를 청구하기 위한 필요한 요건은 오로지 그 손해가 사물의 일상적인 과정으로 보아 그 계약위반의 결과 통상적으로 생기는 손해라는 것, 또는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합리적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계약위반의 예측 가능한 결과로서 미리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라는 것뿐이다. 미국통일상법전의 기초자들은 후자의 견해에 찬동하여 '결과적 손해의 배상에 있어서는 묵시적 합의의 원칙은 배척된다.'라고 명문화하였다.⁵²⁾ 이 객관적이고도 명확한 표현은 Alderson경에 의하여 '피고는 계약당사자 쌍방이 예상하였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말과 전적으로 일치된다.⁵³⁾

Alderson경은 상대방에게 특별한 사정을 알려주었다면, 그 특별사정으로부터 통상적으로 생기는 손실은 마땅히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손실은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리적으로 염두 해 두고 있어야 했던 것, 다시 말해서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와 유사하게 UCC에서는 매도인이 계약당사 매수인의 일반적 또는 특별한 매수목적에 마땅히 알아야 했다면 매도인이 이러한 손실의

51) Hadley 事件의 判決은, 만약 特別한 事情이 알려져 있었더라면 契約當事者 雙方은 契約違反에 대한 特別한 條件을 마련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說示는 豫見可能性의 原則이나, 그 事件의 法則에 대한 基本的인 論理的 根據으로써 說示된 것은 아니다.

52) The Heron II. Koufos v. Czarnikow, Ltd.(1969)에서 契約責任의 경우에는 不法行爲責任의 경우보다도 훨씬 높은 정도의 蓋然性을 가지고 豫見된 損害만이 賠償의 對象이 될 수 있다고 判示하였다.

53) Gerwin v. Southeastern Cal. Ass'n of Seventh Day Adventists, 14 Cal. App. 3d 209,221,92 Cal.Rptr.111,118, 8 UCC 643,653(1971) .

위험을 부담하기로 했거나 아니하였거나 결과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UCC 2-715(2)에 대한 보통법(Common Law) 계보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그 조문 자체의 법률적 해석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판례는 위 조문의 규정에 따라왔고 따라서 보다 덜 제한적인 객관적 접근 방법에 찬성하여 묵시적 합의의 원칙을 배척하여 왔다.⁵⁴⁾ UCC를 원용하면서도 오랫동안 제한적 원칙에 집착하여 왔던 펜실바니아주에 있어서까지도 최근에는 그 견해를 바꾸어 묵시적 합의의 원칙을 버리게 되었다.⁵⁵⁾

UCC는 이 예견가능성의 원칙을 자유롭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견가능성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매도인을 위한 보험자의 책임이 승인될 것을 요하지도 아니하며 또 결과적 손해에 대한 매도인의 의무는 반드시 매도인이 성실하게 적절한 노력을 하지 못한 그러한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⁵⁶⁾

결과적 손해의 성질이 무엇인지를 규정짓는 단계는 논제의 서론 부분에 지나지 아니하며, 문제는 어떠한 종류의 손실이 결과적 손해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실제로 법정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흔하게 주장되는 결과적 손해의 항목은 일실이익이다.

대부분의 법원은, 매수인이 법적으로 부과된 예견가능성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UCC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 왔다. 실제로 이 일실이익의 배상의 문제는 적어도 하나의 중요한 분야에 있어서의 보편화된 문제로 되어가고 있다.

미국 연방 제8순회 항소법원(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Eighth Circuit)은 Arkansas주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매도인이 제조업체에 대하여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물품이 제조과정에서

54) Marion Power Shovel Co. v. Huntsman , 246 Ark.152, 437 S.W.2d 784, 6 UCC 100(1969). 賣渡人은 買受人이 竊을 재배하기 위한 발걸이를 하려는 目的으로 Power Shovel을 買受하였다는 事實을 알아야 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竊 수 확의 감소로 인한 結果的 損害에 대하여 責任이 없다.

55) R.I.Lampus Co. v. Neville Cement Products Corp.,474 Pa.199,378 A. 2d 288, 22 UCC 1172(1977).

56) Great American Music Machine, Inc. v. Mid-South Record Pressing Co., 393 F. Supp. 877, 17 UCC 381(M.D. Tenn.1975).

사용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매도인은 그 물품의 하자가 생산의 중단을 초래할 수도 있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만 된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그로 인한 일실이익은 생산 중단으로 인하여 생긴 자연적인 결과발생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에서는 그 일실이익을 마땅히 배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⁵⁷⁾

피고가 원고의 수압제재소를 가동시키는 데에 필요한 기름을 잘못하여 다른 종류의 기름으로 공급한 결과, 문제의 제재소가 2년반 동안 본래의 기능대로 가동되지 못했던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미 종전부터 기존업체를 가지고 있었던 이상, 그 기간 동안에 원고가 얻은 일실이익은 원고가 과거에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⁵⁸⁾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2년반 동안 그 제재소의 부적절한 가동으로 인하여 생긴 문제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일실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를 인용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제재소의 부적절한 가동으로 인하여 생겨난 부담이 원고의 자금사정을 악화시켜서 원고로 하여금 최대의 생산능력을 발휘 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손해까지도 배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실시하기를, 원고의 최대 생산능력에 걸 맞는 시장 즉 원고의 최대 생산능력에 따라 생산된 물품을 전부 소비시킬 수 있는 적절한 시장이 있었어야 그 생산에 필요로 하는 금융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러한 시장이 없었다는 점, 따라서 원고가 최대 생산 능력에 의하여 생산하였어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볼 입증이 없다고 판시하였다.⁵⁹⁾

일실이익을 제외한 다른 여러 손해의 항목 또한 결과적 손해로서 배상받을 수 있다. 그러한 손해들로서는 매수인이 제3자에게 부담하게 된 법적

57) Lewis v. Mobil Oil Corp., 438 F. 2d 500,510, 8 UCC 625,641(8th Cir.1971).

58) Kokomo Opalescent Glass Co. v. Arthur W. Schmidt Int'l, Inc., 371 F. 2d 208(7th Cir.1966).

59) Burrus v. Itek Corp., 46 Ill App. 3d 350, 4 Ill. 8, 360 N.E.2d 1168, 21 UCC 1009(1977).

비용(legal fees)이나 그 하자있는 물품을 수리하는데 실패한 경우 이에 소요된 수리비용, 인체 또는 재산에 대한 물리적인 손해 등이 포함된다.⁶⁰⁾ 대부분의 법원은 어떠한 손해라도 그것이 결과적 손해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면, 그 손해가 금전으로 환산될 수 있는 것인 한 이를 인정하려는 태도를 취하여 왔다.

어떤 사건에 있어서 항소법원은 만약 원고가 배심원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는 피고가 판 사과소스를 먹어 보았으나 그 소스가 먹기에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결과 원고는 더 이상 이를 먹을 수 없었다는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 진정한 손해가 생겼다는 사실을 확신시킬 수 있다면, 원고는 그 소스를 먹을 수 없으므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결과적 손해로서 배상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었다.⁶¹⁾ 결과적 손해는 또한 매도인의 생산품을 사용 또는 전제한 결과 생기는 제3자에 대한 책임의 형태로서도 생길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예를 상정해 본다.

선주가 케첩(ketchup) 1병을 샀는데 항해 중에 그 케첩이 해상에서 폭발하여 선원에게 부상을 입혔다. 선주가 그 선원에게 지급한 보상은 결과적 손해로서 그 케첩의 매도인으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할 성질의 것이다. 이러한 성질의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일부 법원은 매수인이 배상받을 수 있는 배상의 범위를 매수인의 법적 의무로서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까지로 제한하는 판결을 한 바 있었다.⁶²⁾

그러나 어떤 법원은 이와 달리 살충제 살포비용이 문제가 된 사건에서 판시하기를, '항공기에 의한 살충제 살포 영업에 있어서, 거래상 통용되는 관습이 1차 살충제 살포가 효과적이 못되는 경우 재차 살포하여 주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다면, 원고는 비록 원고 자신이 재차 살포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60) Four Sons Bakery, Inc. v. Dulman, 542 F.2d 829, 20 UCC 381(10th Cir.1976).

61) Hirst v. Elgin Metal Casket Co., 438 F. Supp. 906, 23 UCC 47(D.Mont.1977).

62) Neville Chem. Co. v. Union Carbide Corp., 422 F. 2d 1205, 7 UCC 81(3d Cir.1970), cert. denied 400 U.S.826(1970). 瑕疵있는 탄화수소 기름을 買受한 합성수지 製造業者로부터 합성수지를 買受한 고객에게 賠償을 許容한 事例.

도 기준 이하의 재초제를 판매한 매도인으로부터 결과적 손해로서 원고 스스로 재차 살포한 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⁶³⁾ 이 후자의 견해는 기업인에 대하여 그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거래의 관습과 판례 따라야할 것을 요구하는 실질적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올바른 태도라고 보여 진다.

결과적 손해의 산정에 있어서 요구되는 확실성의 정도는, 매수인이 비록 그의 손실이 계약당시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었던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그의 결과적 손해를 증명할 수 없으면 승소할 수 없다. 매도인은 결과적 손해에 대한 청구, 특히 일실이익에 대한 청구가 너무 추측 적이거나 불확실한 것이라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매수인을 패소시킬 수 있다.⁶⁴⁾

UCC 2-715의 해석은 확실성의 문제에 관한 UCC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즉 결과적 손해의 형태로 발생된 손해의 범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고 본다.

구제방법의 자유로운 운영(liberal administration of remedies)에 관한 규정인 UCC 1-106은 손실을 증명함에 있어서 그 확실성의 정도를 거의 수학적인 정확성에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손실은 그 상황 하에서 합리적이라고 보여 지는 어떠한 방법으로 산정하여도 좋다.⁶⁵⁾

Gerwin v. Southeastern California Association of Seventh Day Adventists⁶⁶⁾ 사건에서, 원고가 배상을 받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확실성이 필요한가 하는 점에 관하여 약간의 시사를 준다. 이 사건에서 매도인은 술집(bar)의 중고품 장비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못함으로써 계약을 위반하였는데, 그 장비는 매수인이 식당과 칵테일 라운지를 가진 호텔에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던 것이었다.

63) Woodbury Chem. Co. v. Holgerson, 439 F.2d 1052, 8 UCC 999(10th Cir.1971).

64) 多數의 法院들은 買受人이 損害의 事實만을 확실하게 證明하는 한, 그 損害額이 확실하지 않다고 하여도 이는 賠償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主張하여 왔다.

65) Leoni v. Bemis Co., 255 N.W. 2d 824, 21 UCC 1057(Minn.1977).

66) 14 Cal.App.3d 209, 92 Cal.Rptr.111, 8 UCC 643(1971).

법원은 이러한 식당과 칵테일 라운지를 가진 호텔이라는 업종이 새로운 신종 업종으로서 매수인도 그 업종에 처음 손대는 처지였으며, 그 지역에 있어서 이에 비교할만한 유사한 업종이 있다는 증거가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인한 장래의 수익은 합리적인 확실성이 있을 정도로 분명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 하였다.⁶⁷⁾ 물론 어느 정도의 확실성만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전매의 목적으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의 일실이익은 이를 전매 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는 이익상당의 금액이 될 것이고, 그 이익상당의 금액은 이미 부수 계약이나 매수인의 정상적인 전매가격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이 될 것이다. 일상물품의 경우에 있어서는 매수인은 전매하려고 한 시기의 시장전매가격을 내세움으로써 그 일실이익을 용이하고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까지 대부분의 법원은 매수인의 신용 실추로 인한 일실이익에 관하여는 UCC 규정에 의한 배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여 왔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기업의 명성에 대한 손해는 너무 추측적인 것이어서 배상받을 수 없다는 점을 그 이유로 한 것이 었다.⁶⁸⁾ 그러나 몇몇 법원은, 이제 매수인은 충분한 정도의 확실성을 가지고 그 기업의 명성에 대한 손해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신용 실추에 대한 손해배상도 허용될 수 있다고 인정하게 되었다.⁶⁹⁾

V. 結 論

근래에 이르러 물품매매에 있어서는 사회사정이나 시대적 요구의 변화

67) *Fredonia Broadcasting Corp., Inc. v. RCA Corp.*, 481 F. 2d 781, 12 UCC 1088(5th Cir.1973).

68) *Traynor v. Walters*, 342 F. Supp. 455, 10 UCC 965(M.D.Pa.1972). 買受人인 都賣商은, 그의 신용실추로 인한 損害賠償을 請求하였으나, '이는 合理的으로 算定하기에는 너무나 推測의인 것이다.' 라는 理由로 배척되었다.

69) *R.E.B. Inc. v. Ralston Purina Co.*, 525 F. 2d 749, 18 UCC 122(10th Cir.1975).

를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나 판례상으로도 하자있는 물품의 공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묵시적인 의무로서 매도인에게 책임을 부담하는 경향으로 발전되게 규정되었다.

UCC 2-315는 특정목적을 위한 물품매매의 효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계약당시에 물품이 요구되어 있는 특정목적과 이와 더불어 매수인은 적합한 물품을 선택하거나 공급받기 위하여 매도인의 숙련도 또는 판단력을 신뢰하고 있는 것을 매도인이 인지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UCC 2-316에 의하 배제되거나 변경되지 않는 한 물품은 그러한 목적에 적합할 것이라는 묵시적 담보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한다.”

UCC는 손해배상의 제한이 비양심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상업적 손해에 대해서는 그것이 비양심적이지 않는 한 손해배상의 액수를 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소비물품의 경우 인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것은 일용 비양심적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다. 담보 책임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제한에 적용되도록 규정한 특칙이 손해배상의 포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UCC가 담보책임의 제한이 비양심적으로되는 사유로 그 하자담보책임의 배제가 비양심적인 것을 확인하는 유력한 증거는 될 수 있다고 본다.

국제물품매매통일법(CISG)에서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물품의 품질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시적 담보규정이 적용된다. 매도인이 계약체결 시에 계약상의 명시적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을 인도할 것이라고 매수인이 미리 알았을지라도, 매수인은 여전히 매도인에 대하여 완전이행을 요구할 계약상의 권리를 보유한다.⁷⁰⁾ 당사자가 물품의 부적합성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데 관하여 합의하는 것은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물론 허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가 준거법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때에는 무효로 될 수도 있다. 매수인이 계약체결 시에 목적물의 계약부적합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러한 부

70) John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pp.256~263.

적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⁷¹⁾ 물품적합성에 관한 매도인의 의무 규정은, 계약에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매수인이 통상의 매매에 있어서 당연히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묵시적 담보에 해당된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체결 시에 물품의 부적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매도인은 물품의 계약부적합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악의의 매수인이 사후에 부적합성을 이유로 구제책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고 부당하기 때문이다.⁷²⁾

주제어: 담보책임, 명시적 담보책임, 묵시적 담보책임, 손해배상

71) Fritz Enderlein,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Seller*, p.159.

72) 惡意의 買受人을 보호하지 않는다는趣旨는 우리 民法 第580條 但書와 같다.

ABSTRACT

A Study on the Remedy for Breach of Warranty under the Uniform Commercial Code

Jeong Il Suh

The seller may take a warranty with respect to the goods. If they are not as warranted, they may be held liable for the breach of warranty. Even when they has not made a warranty, the law will in some instances hold them responsible as though they had made a warranty.

An express warranty is a part the basis for the sale. That is, the buyer has purchased the goods on the reasonable assumption that they were as stated by the seller. When the buyer intends to use the goods for a particular or usual purpose, as contrasted with the ordinary use for which they are customarily sold, the seller makes an implied warranty that the goods will be fit for the purpose when the buyer relies on the seller's skill or judgment to select or furnish suitable goods, and when the seller at the time of contracting knows or has reason to know the buyer's particular purpose and his reliance on the seller's judgment.

A merchant seller who makes a sale of goods in which he customarily deals makes an 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

The Uniform Commercial Code expressly abolishes the requirement a privies to a limited extent by permitting a suit for breach of warranty to be brought against the seller by members of the buyer's family, his household, and his guests, with respect to personal injury sustained by them. Apart from the express provision made by the Code, there is a

conflict of authority as to whether prives of contract is required in other cases, with the trend being toward the abolition of that requirement.

At common law the rule was that only the parties to a transaction had any rights relating to it. Accordingly, the buyer could sue his immediate seller for breach of warranties. The rule was stated in the terms that there could be no suit for breach of warranty unless there was a prives of contract.

The code expressly abolishes the requirement of prives to a limited extent by permitting a suit for breach of warranty to be bought against the seller by members of the buyer. Apart from the express provision made by the Code, there is a conflict of authority as to whether prives of contract is required in other cases, with the trend being toward the abolition of that requirement.

Key Words : Warranty, Express Warranty, Implied Warranty, Damages

참 고 문 헌

- 곽윤직, 채권각론, 서울:박영사, 1995.
- 서정일, 국제거래법, 서울:두남출판사, 2001.
- 서철원, 미국비즈니스법, 서울:법원사, 2000.
- 서헌재, 통상문제와 법, 서울:울곡출판사, 1994.
- 이상윤, 영미법, 서울:박영사, 2001.
- 이태희, 국제계약법, 서울:법문사, 2001.
- 최공응, 국제소송, 서울:육법사, 1988.
- 최대권, 영미법, 서울:박영사, 2000.
- 최준선, 국제거래법, 서울:삼영사, 1996.
- Bart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8 Comp. & Int'l LJ S. Afr. 21(1985). Institute of foreign and Comparative Law, UNISA, Pretoria, South Africa.
- Berman, "The Law of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Lex Mercatoria)," 2 Emory J. Int'l Dispute Resolution 235 (Spring 1988).
- Berman & Ladd, "Risk of Loss or Damage in Documentary Transactions under the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1 Cornell Int'l LJ 423(Fall 1988).
- Brand, "Non-Convention Issues in the Preparation of Transnational Sales Contracts," 8 JL & Comm. 145(1988).
- Bruno & Brinzma, "CISG's New Year's Day Triumph Over UCC," 66 Mich. Bar J. 1206(Dec. 1987). Reprinted with permission of the Michigan Bar Journal.
- Mahmood Bagheri, International Contract and National Economic Regula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00.
- Michael Whincup, Sales Law & Product Liability, Gower, 1999.

- Milton Handler, Robert Pitofsky, Harvey J. Goldschmid, Diane P. Wood, Trade Regulation, Fourth Edition, The Foundation Press, Inc. 1997.
- Ray August, International Business Law, Third Edition, Prentice Hall, 2000.
- Rickey W. Griffin, Michael W. Pustay, International Business, second Edition, Addison-Wesley, 1998.
- Robert H. Mnookin, Scott R. Peppet, Andrew S. Tulumello, Beyond Winning: Negotiating to Create Value in Deals and Disput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 Roger LeRoy Miller, Graylord A. Jentz, Business Law Today, West, 2000.
- Thomas E. Johnson, Export/Import Procedures and Documentation, Third Edition, Amacom, 1997.